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
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일·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9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제외한다)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청원휴가) ① ~ ⑧ (생략)	제12조(청원휴가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
⑨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	⑨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4.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제외한다)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</u>
⑩ ~ ⑮ (생략)	⑩ ~ ⑮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	
연 락 처	(02) 748 - 6149